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16746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주)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납품 지연 및 추가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1. 한국철도공사는 전동차 총 218칸을 계약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주)다원시스와 2024년 약 2,429억 원 규모의 ITX-마음 116칸 추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다원시스는 이전에 체결한 두 차례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에서도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전력이 있음.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는 노후 철도차량 임시 보수에 2026년까지 약 5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부 납품된 차량에서는 기준 중량 초과 등 품질 부실 문제가 드러나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손실을 발생시켰음. 이러한 반복적인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 제재나 충분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동일 업체와 다시 대규모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계약 체결 과정과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됨.

2. 서울특별시 역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주)다원시스와 여러 차례 전동차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3회 연속으로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음. 특히 2021년에 체결된 약 3,733억 원 규모의 5·8호선 전동차 298칸 납품계약의 경우, 납기기한인 2025년 6월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단 한 칸도 납품되지 않았음. 아울러 지급된 선금 1,923억원 중 49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노후 전동차 1,631칸이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742건의 전동차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2024년 12월 약 395억 원 규모의 9호선 전동차 24칸 신규 구매계약을 동일 업체와 다시 체결하였음. 이는 반복된 납품 지연 사례, 선금 사용 내역 미제출

문제, 기술 평가 과정에서 다수 평가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그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 됨.

3. 한편, 경기도는 도봉산 - 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납품과 관련하여 (주) 다원시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이미 대규모·상습적인 납품 지연을 반복해 온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2024년 8월 30일 250억 원, 2025년 3월 7일 185억 원 등 총 435억 원에 달하는 선납금 (계약금액의 약 79.3%)을 지급하였음. 이는 계약 이행에 대한 충분한 담보나 위험 관리 장치 없이 과도한 선지급을 집행한 것으로,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음.
4.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철도 예산의 편성·집행 주체이자 철도 정책의 수립·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현재 코레일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차량 구입과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도 책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 납품 관리, 품질 검증, 선급금 집행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출자·보조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제대로 확인·점검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집행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가 요구됨.

이처럼 한국철도공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일으킨 특정 업체와 연속적으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한 일련의 행위는 공공계약 관리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관리·감독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아울러 철도차량 제작·구매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 납품 관리, 품질 검증, 선급금 집행 등에 대해 적정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됨. 따라서 각 기관의 계약 체결 경위, 업체 선정 과정, 납품 관리 및 제재 여부,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 등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철도차량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 및 출자·보조 사업의 철도차량 구매·계약 등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한 확인·점검의 적정성, 차량 제작과 각종 승인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전반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함.